

제397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5월16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6)
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5)
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0)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2)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9)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1)
1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
1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
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
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0)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7)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
2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
23.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
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
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61)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2)
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1)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3)
3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
3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85)
3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
3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8)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7)
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
4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
4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응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
4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2)
4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0)
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4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6)
4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
5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5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
5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
5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5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9)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8)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5)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1)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8)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6)
7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71.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

상정된 안건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 5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6) 5
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5) 5
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0) 5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2) 5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9) 5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1) 5
1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 ... 5
1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 ... 5
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 ... 5
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 ... 5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0) ... 5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7) ... 5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 ... 5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 ... 5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 5
2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 5
23.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 5
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 5
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 5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61)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2) ... 5
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1) 6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3) 6
3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 6
3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3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85)	6
3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	6
3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7298)	6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1387)	6
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3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	6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	6
4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	6
4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응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	6
4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2)	6
4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0)	6
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6
4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6)	6
4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	6
5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6
5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	6
5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5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	6
5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6
5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6
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6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6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9)	6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6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771)	6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498)	6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227)	6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0285)	6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0851)	6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758)	6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	6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6)	6
7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14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71.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	14

(13시37분 개의)

○위원장 박대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한 후에 소위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이후 소위 심사 상황에 따라 다시 속개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6)
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5)
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0)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2)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9)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1)
1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
1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6)
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
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0)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0)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7)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
2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
23.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
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
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61)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2)
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02101)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3)
3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
3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85)
3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
3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8)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7)
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
4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
4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
4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032)
4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0)
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4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2906)
4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4558)
5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5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4)

5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
5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5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9)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8)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5)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1)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8)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78)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966)

○위원장 박대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69항까지 이상 6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들겠습니다.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 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6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이들의 내용을 각각 하나의 법률안으로 묶은 10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재단법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회원·회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하천수 취수시설의 개념을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하수도 기술 지원 등을 위해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현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통합환경관리인제도를 신설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1년 유예하고 2022년 이후에도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대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부지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안호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2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윤준병, 임종성,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는 한편 현행 특고의 경우 법률의 시행 전에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송옥주, 임종성, 윤준병, 김도읍,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른 보험행정사항을 정비하고 보험료 독촉의 전자고지 근거 등을 두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고용허가 제한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에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7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된 법률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처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신임 환경부차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철 차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는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수도법의 개정으로는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설계,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하수도 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과 관련된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2022년 이후에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멘트 제조업 등 환경영향이 큰 업종을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 사업장의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 공정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공단법, 하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17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환경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정에 맞는 근로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였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입법 개선 의견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위원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제한사유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고 처벌받은 경우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여러 사업

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게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 고지를 전자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은 통상 계약기간이 짧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출산·유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재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차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섭 차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박광석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로 기관 간 관측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고 또한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의사진행발언이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니 엄밀히 말하면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고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논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대선이 있어서 아쉽지만 환노위 전체 회의 개회가 4개월 넘게 미뤄지기도 했었고요. 또 오는 6월 1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다들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밀린 숙제를 하나라도 더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요청이고 희망사항이고 오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가 논의하지 못했던 4건의 근로기준법과 3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와 관련해서 5월 29일까지 저희 임기 아납니까? 저는 만나절이라도 좋으니까 날을 잡아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사항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야 간사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공청회를 열자고 요청을 드렸고 동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은 노동전환 지원법 공청회는 직접 발의하실 생각도 있으셔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 주셨고 제가 좋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환노위는 약속은 지키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29일 전에 지난번 못 다루었던 7개 법안에 대한 심사소위와 1개의 공청회를 법안소위에서라도 좋으니까 개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전체회의 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계속 ‘나중에’ 말씀하시면 저는 상임위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당 간사님께서도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금체불 방지 근로기준법 또 안호영 법안소위원장께서 정부에 수정안,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의원실을 통해 그런 요청을 근로기준국장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법안은 환노위 회의 정회 중이라도 수정안 똑딱 잘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이미 제가 2년 동안 잘 지켜봤습니다. 지난 9일에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뜸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환노위 전문위원 의견을 제가 수용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률안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하는데 장관님,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저는 해당 국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대출 안호영 간사님, 그것 관련한 얘기입니까?

○안호영 위원 예.

○위원장 박대출 예, 말씀하시지요.

○안호영 위원 장관님! 장관님, 여기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위원장 박대출 질의사항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질의하면 안 되는데…… 입장을 말씀하시지요. 필요하시면 토론이나 질의시간에 따로 발언하더라도……

○안호영 위원 아니, 이수진 위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과 관련된 이수진 의원님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달라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당시 차관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관련된 보고를 들으셨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 임금체불 신고 건수도 2020년 기준으로 많고 또 노동자 수도 많고 액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 또 이수진 의원께서 관련된 법안까지 제안한 마당인데요.

과거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재직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경우에 지연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계획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것이 박근혜정부 때도 그 법안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제안된 바도 있고 또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 방향에서 맞는 대안에 대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바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대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추후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드리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충분히 답변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위원장이 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수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법안심사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고요. 이의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야 간사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지만 한두 분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법안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측 입장, 특히 실무자의 입장이 대단히 완강한 반대에 있었는데 저는 그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수용을 못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장관께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 반대의 논리가 말이지요, 이게 무슨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 고용체계의 그런 문제점을 이유로 지금 반대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농촌인력 문제, 농촌의 문제, 열악해지고 있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다른 분야와의 법 형평성을 얘기한다는 건 애시당초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촌 지원과 관련한 농촌직불금, 쌀 수매라든지 농촌직불금 문제라든지 농촌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른 분야하고 형평을 가지고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의 인식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의 가장 큰 원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 농촌·농민들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국회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에 나서야 된다는 점, 이 점만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말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촌의 특수성, 그러니까 식량안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등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실무진들이 논의할 건 논의하더라도 위원장님께 따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한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안 되는 이유는 저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되게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7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71.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

(14시16분)

○**위원장 박대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역소요 보장,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단행한 감액 편성안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환경부 사업들이 당초 취지와 계획에 최대한 차질 없도록 집행여건을 철저히 점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647억 원 감액된 6조 741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4114억 원을 감액하여 11조 158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 수자원, 대기환경 부문에서 사업별 집행상황,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를 약 405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절감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와 경상경비도 약 6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김영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 2022년도 환경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647억 원 감액된 6조 74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64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114억 원 감액된 11조 1586억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업비가 4108억 원, 인건비가 3억 원, 기본경비가 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26억 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647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234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부문별로는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3601억 원, 물환경 부문 355억 원, 수자원 부문 126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유형별 세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입니다.

총 7개 세부사업에서 40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과 하수관로 정비는 집행상황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각 140억 원, 2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 대체수자원 개발은 사업 추진과정 중 일부 구간 설계가 변경되면서 금년 공사 가능 물량이 감소하여 12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대기 전환시설지원 용자사업은 현재까지의 집행상황과 올해 용자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8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에 따른 집행 가능성, 차량 부품 수급난 등에 따른 LPG차 생산량 감소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각 448억 원, 9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사업은 축소하고 조기폐차 지원 및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국내 수소차 공급과 수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 승용차 구매지원 내역에서 22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경상·기본 경비 60억 원 감액의 상세 내역과 19쪽 인건비 3억 원 감액의 상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는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동향에서도 보듯이 숙박·음식, 예술·여가,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총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4139억 원 규모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인당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온 법인택시기사분들에게도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일인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업여건 변화, 공공부문 고통분담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용시장의 회복 추세로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는 구직급여와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일부를 각각 감액하고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경상경비 40억 원을 절감하여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드리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편성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4139억 원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취약계층의 손실보상 및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증액 추경안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으로 인한 예산소요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예산을 감액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76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보험기금에서 35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100만 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오신 법인택시기사 7만 5000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상회복과 집행추이 등을 고려한 감액 부분입니다.

최근 고용상황의 전반적 회복세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가 감소하여 구직급여 예산의 약 3%인 3532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 상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900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체 경상경비의 5%가량을 감액하여 그 재원을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다음 기상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박광석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상청 소관 사업을 제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4521억 원으로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국외훈련 취소 등에 의한 경상경비 14억 원과 연가보상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부 소관 추경안은 총 4114억 원, 기상청 소관 추경안은 총 16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등 환경부 소관 7개 사업비 예산과 연가보상비 및 경상경비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을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의 감액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업용수도 대체수자원 개발사업,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경우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실행행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자치단체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교

부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지출 기준 총 41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개 사업을 증액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2개 사업의 사업비와 그 외 26개 사업의 경상경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5차 지원금에 대한 법인택시기사의 신청 인원이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적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의 목표인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은 기수급자에 대한 지원단가를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기수급자는 소득 감소에 대한 심사가 면제되고 일부 특고 직종의 경우 소득 수준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엄밀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감액하였으나 운영비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비의 절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파악부터 좀 할까요?

다섯 분이시네요.

제가 순서는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김성원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 시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일종의 의사진행발언 비슷하다고 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방역조치기간에 누적된 손실이 일거에 회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 나가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의 성패는 신속한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추경안 통과에 정치적 걸림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미향 위원님 하신다고 손 드셨지요?

○**윤미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하시는 분 중에서 원래 기존의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위주로 희망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첫 추경안은 재원조달을 위해서 역대 최고 수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조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4472억 원으로 부처 중에 네 번째로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인 만큼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여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본래 쓰여야 할 예산이無理하게 조정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또 고유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국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서 삭감된 공무원 인건비 문제인데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명도 발표되고.

과거 2020년 2차 추경 당시에에도 비슷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렇지요,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상임위 차원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구나 코로나19 초기로서 또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었던 2020년 2차 추경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완화되었고 또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지요.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또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공부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공무원노동자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용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공무원노동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재정 당국의 방침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추경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관련해서 노동자 협의나 또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는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취지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이런 예산을 마련하는지 최소한 고용노동부만큼은 공무원노동자 의견수렴하고 또 합의점 찾아서 기재부에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 권리를 위해 일하는 주무부처조차 공무원노동자 권리에 눈 감으신다면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할까라는 더 큰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환경부도 인건비 삭감이 지금 굉장히 큰 액수로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재정 당국과 또 노동자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 공무원 동의를 안 거치셨으면 당장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라도 진행하고 국회에 결과 보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삭감된 경상경비 예산 관련해서 보면 사업 중에는 관계 법령에 따

라서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유의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경상경비 비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경비 등 업무추진비 삭감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노동자 또는 영세사업자 지원 수준과 직결되는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센터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통역비라든가 또 영세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 선임비 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대국민 고용노동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대안도 마련해서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보완하도록,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가보상비를 감액하는 과정에서는 5월 10일 날 기재부나 인사처에서 국가공무원노조 등 노조랑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윤미향 위원** 협의가 아니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내용에 충실하게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제 등등 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영세사업장 컨설팅 이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하신다 그랬지요?

○**윤준병 위원** 예.

○**위원장 박대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윤준병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장관님이 참여는 하셨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제가……

○**윤준병 위원** 보고만 받으셨지요, 그냥?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세부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부처간에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윤준병 위원** 환경부는 다 감액이긴 하지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감액된 내용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이게 들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촉구를 했지만 단순히 집행실적 가지고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물론 실행행로도 여러 가지 편차도 있긴 한데 이번 추경하는 내용의 집행실적을 봤다 그러면 3월 말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에 초기 내용 가지고 집행실적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이유야 여하튼 집행실적을 가지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의지가 담겨야 될 내용이고 집행실적을 높여야 될 사업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실적이 낮다 그래서 삭감되어야 할 사업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소위에서도 그 부분 좀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 경우도 갑자기 2만 대로 조정했는데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건설기계 소유자 등 소형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 별도 경유 유가 연동금을 추가로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돈 문제가 아니고 실제 공해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운송사업자들이 소상공인이어서 금전적으로 보전합니다 이런 차원의 대응이어서는 안 된다, 공해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 우리가 매년 예산할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의 형평성 문제였어요.

아시잖아요,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준 설정이 잘돼야 되는데 더 악화돼요. 원래는 비슷하게, 동일하게 주자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었는데 그게 주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달라서 그래도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줄 때도 있었고,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300에 150 해서 50%를 줬어요. 이번에는 600에 200을 준다 그래요. 왜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의와……

말로는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달리 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기에는 법인택시기사는 개인택시기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도움이 가능하고 또 형평성을 달리 보면 전세버스나 노선버스기사들하고, 여타 취약계층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전부 어려운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재정당국과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심의하시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바로 목소리를 내야 고용노동부장관이지요, 단 하루가 됐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잘 고민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고맙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석하는 위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 소위 회부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직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의사 일정 제70항 및 제71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웅 소위원장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은미 위원님이 다음에 하시지요, 이수진 위원님 다음.

○이수진(비) 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대통령 집무실을 갑작스럽게 용산으로 이전하고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반환 즉시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군기지 토양오염 심각한 상황이지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환경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부는 받았습시다.

○이수진(비) 위원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반환은 국방부 소관이고 용산공원 조성 및 임시 개방은 국토부 소관이에요. 국토부한테도 협력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셔야겠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환경부가 SOFA 협정에 따라서 미군기지 환경조사 실시하셨더라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이수진(비) 위원 보고받으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알려 주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문제인 정부가 1986년 반환받아 임대했던 장교숙소 5단지 정화검증 등 절차 거쳐서 19년에 개방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20년 12월에 반환된 스포츠펠드와 소프트볼경기장, 이것 국토부에서 21년부터 관련 용역사업

추진 후에 12월부터 오염 저감조치 관련 공사 진행해서 개방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보고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수진(비) 위원** 이게 공원 조성 또는 임시 개방을 위한 저감조치가 잘됐는지…… 사실 국토부가 환경적인 영역에 환경부만큼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토양환경 보전 전반의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환경부 실무진을 통해서 본 의원실이 문의한 결과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국민건강과 토양오염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줄속 개방을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집무실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채로 임시 개방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줄속적이고요 환경부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질 거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아직은, 오늘 다 답변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보고받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관련해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부 소관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법 이권 행안부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으니까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해서 제정돼 있는 환경부 이 법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지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다하겠고요. 그러한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이정식 노동부장관님, 코로나 상황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국가가 이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노동부가 성인지 관점, 성평등에 입각한 성인지 관점 차원에서 예산의 배정이나 추경과 관련해서도 좀 정확하게 의견들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 배정이 없더라고요. 증액 의견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에 사실 제가 남녀고용평등법, 특히 무엇보다도 일하는 여성들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데 가족돌봄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심각했고 그래서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아이의 양육 집어 넣는 게 맞다, 열흘의 가족돌봄휴가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5만 원씩 열흘 준 것 가지고 경력단절 해소시켰습니까? 너무나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력단절이 심각하게 됐고요.

2019년에 7만 5000명, 20년 6만 9000명, 21년에 5만 명, 이것은 사실 통계청 자료인데 저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작년 인가요 동아일보 기사에 ‘맞벌이 부부 경력단절 여성 20% 늘었다’ 이런 기사도 아마 확인해 보셨을까 싶은데요.

이 코로나 재난 상황이 3년 이상 이어짐에 따라서 휴교, 등교 연기, 비대면 수업 또 폐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또 자녀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직접 돌봄에 참여했던 여성의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휴교, 등교 연기, 폐쇄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었던 기혼여성들이 이제 코로나 확산세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사업에 코로나19 피해 경단녀의 구직촉진 지원 추경 예산 이것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추세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경단녀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요.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촉진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경단녀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 6개월간 지급을 하는데……

그러나 이와 별도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 필요한지 여부는 중복지원의 우려 등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비) 위원** 저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진단도 사실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정부가 질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지난 5월 4일 날 인사청문회 때 SPC 사 측의 노조과파하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수사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벌써 12일이 지났고 또 장관님이 임기 시작한 지 6일이 됐습니다.

지금 임종린 지회장이 오늘로 해서 단식 50일째인데요 혹시 관련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노동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끝나고 취임하고 나서 바로 담당국에 지시를 해서 청문회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도와 드리고 그리고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부분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행을 해라……

아까 정의당 대표님도 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마 방문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전화 주신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우리가 인명에 불행한 일들은 없도록 하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협의가 많이 좁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노동부가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그냥 노사 간의 자율교섭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특정한 노조를 탈퇴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그리고 진급차별 등의 차별행위를 한 것, 이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위법한 행위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 작년에 노동부에다 진정을 냈는데 늦장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이에 이 노동자가 50일이나 단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섭은 교섭대로 진행하더라도 노동부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부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후의 진행 관련 사항들은 계속 보고 받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4월 1일 날 압수수색하고 지금 압수물 분석 중인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노동자하고 회사하고의 훨씬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때 노동자들이 더 죽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상청장님, 제가 국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보관의 인원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 인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협의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박광석**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이제 행안부라든지 인력 부분이 돼야 되는데 상황 변화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기후위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의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상청의 예보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도 예보관의 인력을 확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예보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박광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위원** 예, 진행과정을 따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환경부장관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0억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환경부가 2021년 수도물 먹는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라든지 원수의 수질관리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비용이 감액된 부분들이 좀 걱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이 한 1176건 있는데 그중의 한 60%가 이 노후화된 수도관의 누수로 인해서 지반이 침식돼서 일어났더라는 그런 원인 분석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또 게다가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할 때 수도물 음용률을 50%까지 높이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송옥주 위원** 지금 추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감액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이번 추경 감액 대상은 하수관로 정비 예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후 상수관이라든지 옥내급수관 개선하고 또 수질 무료

검사 이걸 지속 추진하겠고요.

또 음용률 50%까지 높이겠다고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정비 예산이지만 수도물 관련한 것은 조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후속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2030 NDC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탄소저감목표와 관련된 아주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감액도 제거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33%나 삭감이 됐네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는 이만큼 증액이 되나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이번 삭감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또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승용차에 대한 부분, 공급 부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확대 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 확대를 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해서 NDC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법인택시기사 손실보상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때 택시기사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법인택시노동자들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과 실제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등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지금 여기 예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좀 상향을 해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까지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소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과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이따 소위에는 차관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장관님께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답변을 할 때 좀 자신 있게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노동부장관님 답변 참 잘하시네요, 적극적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돼 가지고 200억 삭감돼 있는데 하수관로사업 관련해서는 실집행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과대, 부풀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과대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개 구간을 감액한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억 삭감되는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맞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돼 가지고도 넷제로 해야지요, 당연히. 우리가 2030년도까지 NDC 40% 상향 조정 세계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2021년에 4416억이었던 예산이 2022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8928억 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차량 반도체, 부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지금 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2만 7650

대 정도 잡았다가 할 수 있는 게 1만 7650대밖에 안 되니까 1만 대 분은 그만큼 자연이 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기 때문에 2250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임이자 위원**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것 불용 처리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임이자 위원** 아니면 또 필요한 만큼은 내후년에 가서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불용 처리되게 되면, 이럴 때 적시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고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보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특고랑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 포함이 안 됐다가 보험설계사도 포함이 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 기준이라고 그런다면 개인보험대리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개인……

○**노웅래 위원** 개인보험대리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동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정당하고 온당하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9개 직종을 제외시켰던 것을 다 포함해서 차별 없이 하자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도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개인보험대리점도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검토할 수 없어요, 대리점은? 지금 대리점은 빠져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자영업……

그래서 특고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하여간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는 있는데요 자영업자……

○**노웅래 위원** 여기도 한 2만 6000명이 된다고 그러대요, 대리점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2만 6000.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는 집어 넣은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집어 넣은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근로형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특고종사자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포함된 건데……

○**노웅래 위원** 아니, 그동안 애매하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대로라면, 지금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대리점도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고 대리점 업주들은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억지주장 같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원은 현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총결산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5차까지 9개 직종 제외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온당하고 정당……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대리점은 포함되기 어려워요? 추가할 수 없어요? 검토할 수 없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보험설계사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포함시켰다고 그런다면 대리점도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동부 입장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하는 분들은 특고 9개 직종이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험개인 대리점은 고용보험상의 특고가 아니고 완전 자영업자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 소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지원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어렵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검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 부분은 자영업자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는 저희 소관이 지금 아닙니다. 중기부 소관……

○**노웅래 위원** 중기부 소관이라고 그래도 지금 이 기준대로면 고용부가 됐건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여기도 지원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다른 부처랑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자영업자, 여기 고용부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해서 받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노웅래 위원** 그리고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기존 자료 이용해서 그냥 선정을 하는데 기수급자 아닌 사람, 새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득감소 관련한 요건 확인절차를 밟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이것도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까지 기수급자는 소득조사를 안 했고요 신규는 해……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이것도 사실상은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지원금 설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옛장수 마음대로 그냥 주는 식이잖아요, 기초자료도 없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옛장수 마음대로라기보다 지금까지 국회 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웅래 위원** 그래서 이 기초자료, 실태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야 되지요.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간사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이번 추경안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아한 것은 지난번 본예산을 할 때는 정부에서도 본예산안을 내서 다 심의를 해서 했는데 추경에서 다 깎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안을 내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 환경부에서 이렇게 추경안 제출한 핵심 기조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금번 추경안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서 환경부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집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안호영 위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낮아서 감액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니 그동안에, 물론 집행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여건, 작년에……

○**안호영 위원** 좋아요.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수소연료 전지차, 수소차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물론 집행을 문제도 있고 외부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무공해차, 특히 수소전지차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소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하게 되면 정부가 앞으로 수소차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 점

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수소차정책의 정책 방향은 기조는 그대로 잡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면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승용차 부분이 아닌 상용차 부분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용차 부분을 확대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승용차 부분을……

○**안호영 위원** 수소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침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일단 승용차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용차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좋습니다.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상용차 부분이 사실은, 수소차 부분은 상용차 부분이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고.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승용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생산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생산하는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의 실제 상황들 확인해 보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저희도 그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출시목표나 이런 부분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바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소위에서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출시되는 연도가 지금 보니까 정부는 너무 늦게 잡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 외에도 BMW라든가 스텔란티스라든가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도 수소차 출시계획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줄여 놓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출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안호영 위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 소비자에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계속할 것이

고 또 생산자, 공급자에게도 앞으로 이런 수소차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관련해서, 실제로 이걸 보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보다 지금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 환경정화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국토부가 무리하게 위해성 저감 임시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대로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께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채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위 심사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확한 속개시간은 소위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웅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웅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기상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수소상용차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상용차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소차 보급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7건의 환경부 소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법인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의 지원금 차등에 대해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4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 감액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연차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공통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대출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법인택시기사 얼마로 들어갔나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내용은 정부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 정도 다는 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제대로, 예전보다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지. 예전에 개인택시 대비해서 2분의 1 수준 정도까지는 했는데 지금 2분의 1도 무너졌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기존의 목표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부대의견에는 목표인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저희가 차질 없이 목표인원 7만 500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목표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하지요. 법인기사들이야 당연히 그 인원만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인원은 법인택시기사들 인원이 줄었다고 그러니 준 만큼 금액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런데 소위에서 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윤준병 위원 그것 최소한도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했던 금액 이상 수준은.

장관님, 동의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니, 저희는 지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소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왔는데 정부안이 법인택시기사는, 지금 위원님은 2분의 1에서 더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이 있는데, 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200만 원을 책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는데……

○윤준병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형평성을 근거로 하면 200만 원이 적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니, 그러니까 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이지요.

○윤준병 위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같은 택시기사인데 택시기사 중에 개인택시가 더 양호합니까, 법인택시가 더 양호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개인택시가……

○윤준병 위원 개인택시가 더 양호하잖아요. 그러면 법인택시가 훨씬 열악하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악화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비율로 보면 악화됐습니다라는 금액으로 보면……

○윤준병 위원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받는데 예전보다 좀 금액이 늘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게 맞으면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지 맞다고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지요.

○위원장 박대출 그 부분은, 지금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니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송옥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 ‘형평성·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 마나한 얘기지.

○위원장 박대출 소위에서 이렇게 정리한 걸로 존중해서 하시지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윤준병 위원 아닙니다, 이것 수정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위원장 박대출 지금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네요, 보니까.

○윤준병 위원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뭐 형식적인 얘기로 하는 거야 의미가 없지요. 그게 뭐……

○이수진(비) 위원 소위에서 논의가 된 것은 증액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임이자 위원 그냥 원안대로 해……

○김웅 위원 원안 그냥 넘기고 합의 안 되면 가면 되지 뭐.

○임이자 위원 합의 안 됐으니까……

○윤준병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하세요.

○임이자 위원 예결위로 넘기세요, 그냥.

○윤준병 위원 예결위로 그냥 넘기자고요, 그러면.

○박대수 위원 예결위로 넘겨, 그냥. 그럼 되지 뭐.

○위원장 박대출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한 걸 존중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지금 소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다 합의해서 왔는데……

○윤준병 위원 아니, 소위에서 했다 하더라도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야지요.

○임이자 위원 소수의견으로 남기시고 통과시키도록 해 줘야지.

○윤준병 위원 예결위로 그냥 넘기자고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해, 그러면?

○이수진(비) 위원 저희 소위에서 반대의견 얘기했었어요.

○윤준병 위원 아니, 의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

○김웅 위원 아니, 소위에서 그러면 강제로 의결했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법인택시기사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을 수용 못 하신 거지요.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에서 아까 의결했던 내용은 그럼 뭐니까? 속기록 갖고 와 보세요, 이따가 속기록.

이의 없습니다하고 통과한 건 뭔데 그러면? 소위는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수진(비) 위원 뭘 장난으로 합니까!

○임이자 위원 소위에서 의결했잖아요.

○김웅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의견 제가……

○이수진(비) 위원 저희 의견이 뭐였어요? 노동부한테 무슨 의견 드렸어요?

○안호영 위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체회의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김웅 위원 소위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 안 되지.

○임이자 위원 소위 위원이 과반입니다. 소위 위원이 과반이잖아요, 9명이잖아요. 소위 위원 과

반이 의결을 했는데, 동의하고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명 중에서 9명이 동의를 했는데…… 그럼 소위를 뭐하러 합니까, 의결을 왜 하고?

○박대수 위원 그러면 이수진 위원은 아까 발언을 하셨어야지.

○이수진(비) 위원 아니, 제가 법인택시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김웅 위원 아니, 마지막에……

○이수진(비) 위원 증액해야 된다고 노동부한테 의견을 얘기했어요.

증액 의견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왜 안 했냐고. 소위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준병 위원님.

○박대수 위원 됐고요, 예결위로 넘기자고.

○김웅 위원 소위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소위 때는 이야기 다 끝내 놓고 나서.

○임종성 위원 소위에서 했어도 위원님들이 소위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안할 수 있으니까 받아 주시면 되는 거지.

○위원장 박대출 그렇습니다. 충분히 소위에 참여 안 하신……

○임이자 위원 그래서 전체회의 때 했잖아요.

○임종성 위원 받아만 주시면 되니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

○위원장 박대출 참여 안 하신 위원님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 개진할 수 있고 또 여전히 개진하면서도 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그렇게 엄정히 심사하신 것도 결과를 존중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윤준병 위원 의견 일치 안 되면 그냥 넘기자고요.

○임이자 위원 소위 실컷 해 놓고 왔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까짓 소위 뭐하러 해요? 앞으로 소위 하지 말아, 절대로.

○윤준병 위원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안호영 위원 소위에서도 쟁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소위 참여 안 했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뭐.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소위에 참여 안 했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수의견으로 담고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시면 된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출 지금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속기록에 기록이 다 남아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신 게 정리가 되고……

○윤준병 위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의견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대출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임이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 6월 말까지인가 우리 위원회가?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5월 29일입니다.

○임이자 위원 5월 29일까지 아무것도 못 해, 이제.

○윤준병 위원 뭐 하려고는 하시고 계십니까?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임이자 위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오늘 아침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윤준병 위원 하시려고 하고는 계세요?

○임이자 위원 그것을 왜 물으세요?

○윤준병 위원 하시려고 하고 계시냐고요.

○임이자 위원 왜 묻냐고요, 그것을!

○윤준병 위원 아니 할 의사가 있냐고요, 진정으로.

○임이자 위원 그것은 내 맘이지요!

○윤준병 위원 그런 의사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임이자 위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관심법 하세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잖아요, 있냐고.

○임이자 위원 묻지 마세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임이자 위원 묻지 마시라고!

○위원장 박대출 그 부분은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윤준병 위원님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소위 안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윤준병 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저는 양해 못 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이것을 또 표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표결할까요?

○임종성 위원 표결하는 건 안 맞고 간사님들끼리 의논해서……

○박대수 위원 간사님들이 논의해 가지고 끝낼

시다.

○위원장 박대출 그러니까 간사 간 합의로 처리를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간사끼리 논의했으니까 아까 소위에서 의결했잖아요. 소위 위원장이 의결하고 방망이 두드린 건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 그다 무시하라는 얘기야?

○위원장 박대출 그러면 일단 정회 없이 말이지요, 정회 없이 두 간사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또 정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간사님, 이리 와 보세요, 정리하시고.

(위원장, 간사와 협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수 의견으로 여기 기록에 남기고, 부대의견으로 넣고 포함을 시켜서 소위에서 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래 위원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노동자 입장이 아니고 어디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재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래 위원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국회에서?

○위원장 박대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회의 중에 사업별 추정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웅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상황과 후속 연도별 사업계획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사업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김웅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국가재정이 코로나19의 상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박광석**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웅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대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안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은 미	김 성 원	김 웅	노 웅 래
박 대 수	박 대 출	송 옥 주	안 호 영
윤 미 향	윤 준 병	이수진(비)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철 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고 상 근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한	화
차	관	유	제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기후탄소정책실장		김	법
물관리정책실장		이	영
자 연 보 전 국 장		김	종
자 원 순 환 국 장		홍	동
환 경 보 건 국 장		박	용
정 책 기 획 관		정	선
			화

고용노동부

장	관	이	정	식
차	관	권	기	섭
기획조정실장		박	성	희
고용정책실장		김	영	중
기상청				
청	장	박	광	석
차	장	유	희	동
기획조정관		장	동	언
관측기반국장		연	혁	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5. 2. 임종성 · 강선우 · 김정만 · 김병주 · 노웅래 · 민병덕 · 서영석 · 송옥주 · 신현영 · 어기구 · 용혜인 · 우원식 · 유정주 · 이수진(비) · 임호선 · 최기상 의원 발의)

5월 3일 회부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5. 3. 정태호 · 강선우 · 김교홍 · 김상희 · 송갑석 · 신정훈 · 이수진 · 최기상 · 한병도 · 홍성국 · 황운하 · 홍익표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5. 3. 정태호 · 강선우 · 김상희 · 송갑석 · 신정훈 · 이수진 · 최기상 · 한병도 · 홍성국 · 황운하 · 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4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유기홍 · 김두관 · 김철민 · 김홍걸 · 남인순 · 송재호 · 양정숙 · 오영환 · 이학영 · 이형석 · 최기상 의원 발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노웅래 · 고영인 · 김정호 · 서삼석 · 신정훈 · 양정숙 · 윤준병 · 이수진(비) · 이해식 · 전용기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임이자 · 권명호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형동 · 박대수 · 정점식 · 주호영 · 하영제 · 한무경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임이자 · 권명호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형동 · 박대수 · 정점식 · 주호영 · 하영제 · 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6일 회부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2. 5. 6. 박대출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원 · 박덕흠 · 박성중 · 이명수 · 이영 · 조명희 · 하영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2. 5. 6. 박대출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원 · 김용 · 박덕흠 · 박성중 · 이명수 · 이영 · 조명희 · 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회부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5. 9. 김정재 · 김석기 · 김형동 · 김영식 · 김성원 · 서일준 · 이주환 · 정우택 · 한무경 · 金炳旭 의원 발의)

5월 10일 회부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5. 11. 김정재 · 김상훈 · 김석기 · 김형동 · 김영식 · 김성원 · 서일준 · 정점식 · 이주환 · 정우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2022. 5. 11. 김희재 · 강민정 · 김민철 · 남인순 · 민형배 · 서동용 · 송옥주 · 양경숙 · 양정숙 · 양향자 · 정일영 · 조오섭 · 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회부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2. 5. 13.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유기홍 · 양정숙 · 남인순 · 송재호 · 이학영 · 김두관 · 이형석 · 오영환 · 최기상 · 김철민 의원 발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비준동의안

(2022. 5. 4.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2. 5. 6. 권성동 · 金炳旭 · 김예지 · 김학용 ·
박형수 · 성일중 · 이종성 · 이주환 · 정운천 ·
하태경 · 허은아 의원 발의)

5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이병훈 · 김승남 · 김용환 · 김주영 ·
김철민 · 노웅래 · 박광온 · 박성준 · 박정 ·
성일중 · 여기구 · 오영환 · 윤상현 · 윤영덕 ·
윤영석 · 이상현 · 이채익 · 임오경 · 홍성국 ·
홍익표 의원 발의)

5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1년도 환경부 자체평가결과 보고

(2022. 5. 11. 환경부장관 제출)

**2022년도 1/4분기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2. 5. 1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제출)

2022년도 1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및 이체 내역

(2022. 5. 12. 환경부장관 제출)

2022년 1분기 이·전용 현황

(2022. 5. 12.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1년도 기상청 자체평가(주요정책 부문) 결과

(2022. 5. 12. 기상청장 제출)

○계획서 제출

2022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22. 5. 11.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2년도 기상청 성과관리시행계획

(2022. 5. 11. 기상청장 제출)